

여성에 대한 폭력, 그것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

E/CN.4/1998/54
1998년 1월 26일
인권위원회
제54차 회기
임시의제 안건 9 (a)

목 차

	문 단
서문	1 - 7
I. 무력충돌 시 여성 폭력	8 - 114
A. 무력충돌 시의 여성폭력 사례	19 - 57
B. 법적 틀	58 - 68
C. 법적 틀의 적용	69 - 89
D. 사회경제적 결과	90- 94
E. 무장 충돌 : 권고	95- 114
II. 여성에 대한 감호 폭력	115 - 159
A. 경찰 감호	118 - 125
B. 다른 형태의 감호	126 - 128
C. 여성에 대한 감호폭력의 형태	129 - 131
D. 여성에 대한 감호폭력 사례.....	132- 141
E. 감호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조치.....	142- 146
F. 국가 감호 시 개인 대우의 국제기준.....	147- 150
G. 권고	151- 159
III. 난민과 국내난민된 여성에 대한 폭력	160 - 230
A. 난민 발생시 젠더기반한 폭력의 성질.....	162 - 165
B. 젠더에 기반한 기소의 현재의 법적 지위	166 - 198
C. 난민과 국내난민된 여성에 대한 폭력 사례.....	199 - 207
D. 난민여성에 대한 폭력.....	208- 213
E. 여성난민을 젠더기반한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한 계획.....	214- 222
F. 권고	223- 230

서문

1. 인권위원회는 제53차 회기의 결의문 1997/44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E/CN.4/1997/47과 Add.1-4)를 환영했으며, 그녀가 수행한 가정 폭력과 지역사회 폭력에 대한 분석에 감사를 표시했다. 인권위원회는 같은 결의문에서 현 특별보고관이 3년 더 재임하고 제54차 회기부터는 특별보고관의 업무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2. 현 보고서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여성폭력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지난 보고서의 후속 작업으로 국가가 저지르거나 묵인한 여성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분석한다. 제1장은 무장 충돌시 여성폭력을 다루었고, 제2장에서 특별보고관은 여성에 대한 감호 폭력을 살펴보며, 제3장에서는 난민 여성과 국내난민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고찰한다.

국가 방문

3. 특별보고관은 무장 충돌시 여성에 대한 강간과 성폭력 문제 (E/CN.4/1998/54/Add.1)에 관해 자신이 르완다에서 수행한 임무의 보고서에 인권위원회가 주목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이 기회를 이용해 르완다 정부가 그녀의 방문을 지원하고 르완다 내 정부, NGO 관련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 특별보고관은 1997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방문이 연기된 것을 유감스러워 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파키스탄 정부가 다시 관대히 허락하여 1998년에는 방문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4. 또한 특별보고관은 제55차 인권위원회 회기 전인 1998년과 1999년 사이에 수감 중인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여성폭력과 종교법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아시아지역과 중동지역도 방문하기를 희망한다.

5. 특별보고관은 지난 3년간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여성폭력과 국가에 의한 여성폭력에 관한 첫 번째 일련의 보고서들을 끝마치고 나서, 다음 일련의 보고서에서는 가정 폭력, 인신매매, 강제매춘, 그리고 국가가 저지르거나 묵인한 여성폭력과 같은 특수한 양상들에 대해 더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6. 특별보고관은 지난 보고서에 지적된 것처럼, 현장 방문 보고서에 간략한 후속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특별보고관 권고문의 이행에 관한 정보와 조사된 문제들에 관련해 국가별로 새롭게 전개된 사항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기타 활동과 사업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하여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후속 임무 또는 권고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것이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현 보고서에는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에 대한 청원

7. 특별보고관은 여성폭력의 개별 주장에 따른 청원(Communication)과 관련하여 고문 특별보고관,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수단 인권상황 특별보고관과 함께 합동 긴급 소송 또는 청원을 제출하는데 참여했다. 특별보고관은 관련 정부에 다수의 개별 청원 또한 제출했으나 문건의 전달이 지체되어 정부의 답변은 특별보고관의 다음 보고서에 반영될 것이다.

I. 무력 충돌시 여성폭력

8. 지난 세기를 통해 무력 충돌시 여성폭력은 지속적이며 광범위하게 발생해왔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점령군의 용인된 관행이라는 불문의 유산이 존재해왔다.

9. 군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남성적이고 반여성적이며, 여성의 권리 개념에 대해 적대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군사 조직에 팽배한 남성 문화는 본질적으로 반여성적이며 따라서 여성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미국 군사 조직에서 많은 수의 성희롱 사례가 보고되는 것은 군대 내의 반여성주의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여성이 이 군사 제도를 해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많은 여성이 군사 제도에 편입하여 제도적 평등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논쟁이다.

10. 지난 수 세기 동안 고안된 법이 무력 충돌 시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제공했다. 이러한 법은 인도주의법 또는 전쟁법의 형식으로 성문화되어 전 세계에서 군인들의 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법은 규칙을 파기한 병사의 개인 범죄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특정 국제 범죄에 보편사법권(universal jurisdiction)을 부여한다. 보편사법권은 모든 국가에게 특정 범죄의 가해자를 체포, 기소, 처벌할 수 있는 사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네바협약을 통한 전쟁법의 성문화는 제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11. 최근까지 무장 충돌시 여성폭력은 “보호”와 “명예”라는 관점에서 언급되어 왔다. 전시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제네바협약 제27조항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폭력의 범죄가 아닌 명예를 침해한 범죄로 취급한다. 순결, 순수, 처녀성 개념과 연결된 명예

패러다임을 사용함으로써 전형적인 여성성의 개념이 인도주의법에 공식적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국내법이나 국제법 모두에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도덕성과 연결되게 된다. 강간이 명예나 도덕에 대한 범죄로 여겨지면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치심이 뒤따르며, 지역 사회는 피해자를 흔히 “더러운” 또는 “망가진” 여자로 간주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그들이 당한 폭력을 보고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 강간의 특성과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려는 경향으로 인해 여성폭력은 특히 조사하기 어려운 인권침해가 된다.

12.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서 희생자의 명예보다는 적의 명예가 목표로 인지된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흔히 그렇게 경험된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자신들의 여성을 보호하는데 실패한 상대편 남성들에 대한 승리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적을 거세한다는 메시지이다. 이것은 여성의 몸을 두고 남성들 간에 벌이는 전쟁이다.

13. 강간은 상징적 행위로서 승자와 패자 모두에 의해 이용된다. 프랑스를 “강간한다”는 이미지를 재현하기 위해 여성을 강간하는 모습을 담은 제2차 세계대전 포스터가 보여주는 것처럼, 상대편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 강간이 이용된다. “자신들의” 여성에 대한 강간은 적에 대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적을 악마화하기 위해 이용된다. 악마화 또는 비인간화 과정은 다시 또 다른 강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시에 강간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그들의 집과 마을을 떠나도록 유도하는데 사용된다. 강간은 흔히 군인들의 “특권”의 하나로 여겨지고 그것을 통해 전장에서 용기를 북돋울 수 있다고 믿었다. 다시 말해 강간은 자연스러운 전쟁의 결과로 여겨진다. 전시 강간의 이러한 특성은 군에 의한 강제매춘과 성노예제를 통해 제도화되어 왔다. 이러한 관행은 무고한 시민들을 강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제로서 정당화되어 왔다.

14. 성폭력의 결과는 여성 피해자에게 신체적, 감정적, 심리적으로 매우 파괴적인 것이다. 생존한 피해자의 요구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훈련을 받은 인력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다. 더욱이 몇몇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강제하여 강간 피해자를 더욱 모욕하기 위한 전쟁 무기로 강제임신(forced impregnation)을 저질러 왔다. 강간 희생자들 중 몇 명은 강간으로 원하지 않는 아이를 출산했다. 또한 몇몇 생존자들은 홀로 경제력이 적은 가장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보이지 않던 것이었으나 지난 수세기 동안 무력 충돌시 성폭력을 다루는데 새로운 기준이 생기면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15. 1949년 제네바협약은 국제 무력 충돌과 세계대전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주로 국제 무력 충돌 시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도록

고안되었다. 현대형 전쟁은 전형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국가와 게릴라 간의 전투로 민족 국가 내에서 발생한다. 제네바협약 제2의정서와 공통조항 제3조(Common article 3)는 국내 무장 충돌에서 인도주의법 기준을 적용한다.

16. 준군사 조직이나 게릴라 조직과 같은 국가가 아닌 행위자가 국가의 내부 문제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행위자가 되고 있다. 국가와 국가적 행위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개념화된 국제법 상에서 국가가 아닌 행위자들의 위치는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아메리카 인권법원(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의 벨라즈케즈(Velásquez) 판결은 국가가 아닌 준군사 조직에 대한 국가 책임의 기준을 명시한다. 공식적인 국가 행위자로서의 행동이든 준군사 조직의 행동이든 국가는 이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이를 방지, 기소, 처벌할 의무를 갖는다. 인권의 개인적인 침해에 대한 방지, 기소, 처벌에 국가가 책임을 갖도록 하는 기제를 통해 동일 기준이 국가가 아닌 행위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 왔다.

17. 국가가 아닌 행위자가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수단이 국제법 상에서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은 국가가 아닌 행위자가 수행한 전쟁 또한 공통조항 제3조에 구속된다는 국제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따라서 국가 권력과 대항하는 국가가 아닌 행위자도 국제 인도주의법을 존중해야 한다. 개인 범죄자 책임과 보편사법권 또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수행하는 전쟁에도 적용된다. 알제리아와 카시미르에서 일어난 국가가 아닌 행위자에 의한 강제혼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성은 무력 충돌 시 국가가 아닌 행위자가 저지르는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기 때문에 공식적 국가의 지배 하에 있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명확한 기준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18.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전투 부대의 고위 계급에 진입하고 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도 전쟁 범죄로 기소되고 있다. 예를 들어 르완다 집단살해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이들 중 몇 명은 다른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기도 했다. 페루와 스리랑카에서 여성 전투원들은 전장의 최전방에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네바협약은 남성 군인과 전투원의 입장에서 기준이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여성 전쟁포로의 요구와 여성 전범자의 과제를 고려하여 재구성되어야 한다.

무력 충돌 시의 여성폭력 사례

19. 다음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진실 규명자(fact finder)가 보고한 무력 충돌시

여성폭력에 대한 사례들이다. 그들의 진술은 하나 이상의 출처를 통해 확립되었다. 이 목록이 폭력사례의 전체가 아니며 또한 대표성을 갖지도 않지만 무력 충돌시 여성에게 저질러진 폭력의 성격과 정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몇몇 사례연구는 특별보고관에게 직접 진술하는 형식으로 보고되었고, 다른 사례는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 등과 같은 국제인권NGO의 보고서를 통해 입수되었다.

아프가니스탄

20. 탈리반 칙령은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것을 사실상 전면 금지했다. 이것은 카불의 보건 체계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여성 간호사가 보건 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일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은 보건 체계의 심각한 손상을 야기했다. 환자를 돕기 위해 나갔던 여성들은 탈리반 경비병에게 반복적으로 구타당했다. 1997년 10월 30일 17살 청년으로 알려진 안전지역 담당 탈리반 당국자가 병원에 왔다. 두 명의 여성이 부르카(burqas 이슬람여성이 입는 몸 전체를 가리는 옷)를 착용하지 않고 스카프와 긴 코트만 착용한 것을 보자 심하게 화를 내며 두 여성을 근처의 나무로 끌고가 나무 가지로 구타하기 시작했다. 한 명이 도망치려 하자 붙잡아 바닥에 눕히고 두 다리 사이에 끼운 채 막대로 구타했다.

21.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규정을 끊임없이 제정하여 새 법안에 여성인권 거부를 포함시킨 것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 정권이긴 하지만 탈리반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전투 세력들이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국제사회는 아직도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치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만일 알려진 대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전투 세력을 지원하였다면 외국의 지원을 받는 이러한 세력들이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국제사회가 보장할 의무 또한 가지고 있다.

알제리아

22. 1994년 3월 ‘무장 이슬람 그룹(Armed Islamic Group)’이라는 세력은 공공장소에서 베일을 하지 않는 모든 여성을 잠재적 군사적 목표물로 분류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위협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토바이에 탄 총기휴대자가 집에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 2명을 사살했다.

23. 알제리아 내전은 아마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분쟁일 것이다. 남녀 모두가 목표물이 되고, 내전의 양측 모두에게 인권 침해의 잘못이 있지만 무장한 이슬람 반대세력(armed Islamic opposition)은 베일을 하지 않은 여성, 전문직

여성, 혼자 사는 독립적인 미혼여성들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엄격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여성들을 특히 더 혹독하게 취급한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지배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의 강제혼인과 기타 다른 형태의 유괴에도 관여하고 있다. 무력 충돌시 국가가 아닌 행위자도 인도주의법에 따라야 한다.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B의 사례

24. “그것은 내가 도착하자 곧 시작되었다. 낮 동안 우리는 대형 체육관에 머물렀다. 감시병이 항상 지키고 있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우리들 중 한 여자를 끌고 나가서 구타했고, 평소보다 많은 수의 남자가 그녀를 강간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별주는 것을 즐겼다. 그들은 여자들에게 시내에 남자 친척이 있는지 묻곤 했다. 나는 그들이 한 여자에 이것을 물어본 후 14살 된 그녀의 아들을 찾아서 데려와 그녀를 강간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목격했다. 우리 중 몇 명은 이름을 호명하여 또 몇 명은 그저 무작위로 불러나갔다. 남자가 나를 강간 할 수 없으면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대신 병이나 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오줌을 누었다. 현지 세르비아인들 중 몇 명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머리에 스타킹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내가 함께 일하던 의사 동료들이었다. 나를 처음 강간한 [남자]는 조딕(Jodic)이라는 이름의 세르비아인 의사였다. 나는 조딕을 10년동안 알고 지냈다.”

25. 이러한 학대가 만연했으며, 많은 고발이 접수되었으나 아직 한 명도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on the Former Yugoslavia)에서 성폭력으로 판결된 적이 없다. 국제사회는 이 재판소의 진행이 더딘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딜리(Dili) 지역의 전 주교 돔 마르티노(Dom Martinho)의 증언

26. “사람들이 늘 내게 와 비밀을 털어놓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것을 말하려고 내게 온다. 여성과 소녀들까지도. 한 소녀는 티모르인 남성과 물탱크 안에 들어가도록 강요당했으며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물탱크 안에서 그와 성교하도록 강요당했다. 그들은 도덕심도 인간성도 없는 것 같았다. 그들이 즐겨하던 관행 중에 하나는 남편 앞에서 부인을 강간하는 것이다. 바로 그 앞에서. 때로는 아이들도 보는 앞에서.”

27. 특별보고관은 인도네시아 안보군이 동티모르에서 저지른 성폭력과 관련하여 많은 보고를 받았다. 고발된 위반행위들 가운데에는 성폭력, 강간, 강제혼인, 강제매춘, 활동가로 의심받는 이들의 여성 친척 협박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

당국은 국제적 의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사례도 기소되지 않았다.

과테말라

28. 1996년 노조 간부인 빌마 C. 곤살베스(Vilma C. Gonsalves)는 살해 협박을 받은 후 유괴되었다. 그녀는 무장한 남성들에 의해 강간당하고 다른 신체적 부상도 당했다. 1996년 2월 그녀는 “창녀, 우리는 너에게 이 나라를 떠나도록 48시간을 주겠다.”라고 적힌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같은 날 유괴되었다.

29. 1996년 12월 29일 과테말라 정부와 애국혁명단(National Revolutionary Unit) 사이에 평화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개별적 여성폭력 사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아이티

30. “남자들이 내 사촌과 의붓딸 S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왔다. 사촌은 17살이었다. 그들이 내 사촌을 강간하려 했으나 그녀가 생리중인 것을 알고 그만 두었다... 무장한 민간인들 중 한 명이 사촌의 다리 사이에 총을 집어 넣고는 성희롱했다. 그는 자기 손을 그녀의 잠옷 속에 넣고 가슴을 만졌고 배와 허벅지도 손으로 문질렀다. 그 후 군인들은 집을 뒤져 식량을 약탈했다. 그들 중 두 명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지역 경찰이던 다른 한 명은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31. 1994년 대중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정부가 복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티 무장 세력의 불처벌을 종식시키기 위한 별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

인도: 데브키 라니(Devki Rani) 의 사례 (편집)

32. “경찰서에서 그들은 내 다리를 벌리게 하고 손은 뒤로 묶었다. 부경위(Sub-Inspector)가 내 허벅지에 올라탔다. 부경위보조(Assistant Sub-Inspector)와 경찰서장 그리고 다른 두 남자가 나를 고문하고 성희롱했다. 내 머리는 몇 번이나 물속에 담귀졌다. 내 아들 라제쉬 쿠마르(Rajesh Kumar)는 내 옷을 벗기라고 강요되었다. 나는 3일 동안 부당한 감금으로 억류되었다.”

33. 이 사건은 국제인권단체가 고등법원에 청원을 신청한 뒤 재판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다.

34. 카시미르 지역 쿠난 포쉬퍼(Kunan Poshpor)라는 마을에서 많은 여성이 라지푸타나 라이플(Rajputana Rifles) 군인들에 의해 강간당했다고 고발했다. 인권 운동가들은 이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비정부언론위원회에게 독립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여성들의 고발은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국제 NGO들은 진상조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으며 당국자들은 강간고발사건을 조사하기보다는 정부군을 보호하는 데 급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5. 인도는 피해자들을 최대한 고려하는 증거수집 과정을 제공하는 감금강간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안보군에 의한 강간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당국은 조사도 기소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 기소, 처벌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36. 잠무(Jammu)와 카시미어(Kashmir) 지역의 무장반군에 의한 대항 폭력(counterviolence)도 인권기준에 대한 침해로서 마찬가지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특별보고관은 특히 미혼 여성이 무장반군에 의해 납치, 강간당한 후 그 일원의 신부가 되도록 강요되는 강제혼인 주장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위반은 강간, 고문뿐만이 아니라 전시 성노예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본: 제2차 세계대전시 “위안부”였던 정씨의 사례

37. “13살이었던 6월 어느 날 나는 들에 일하러 가신 부모님을 위해 점심을 준비하려고 마을 우물로 물을 길으러 갔다. 일본 군인 한 명이 그 곳에서 나를 잡아갔다. 나는 화물차로 경찰서로 옮겨졌고 거기서 여러 명의 경찰이 강간했다. 내가 소리치면 내 입에 양말을 밀어 넣고 계속 강간했다. 내가 울자 경찰서장이 내 왼쪽 눈을 때렸다. 나는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열흘 정도 후에 나는 일본 수비대로 옮겨졌다. 그 곳에는 400명 가량의 한국인 소녀들이 있었고 우리는 성노예로 하루에 5000명의 일본군을 상대해야 했다. 나는 매번 반항하였고 그들은 나를 때리고 내 입에 걸레를 쑤셔 넣었다. 한 번은 군인이 내가 복종할 때까지 나의 아랫도리에 성냥을 대고 있었다. 내 아랫도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38.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과거의 폭력 문제를 다루면서 몇 가지 환영할 만한 노력을 했다. 일본 정부와 여러 일본 수상들이 유감을 표명했고 전 “위안부”에게 사과를 했다. 개인 피해자에게 각각 2백만엔씩 지원하기 위해 국민 기금(Asian Women’s Fund)이라는 민간 기금이 설립되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100명 이상의 피해자가 기금을 받기 위해 신청했으며 약 50명 가량이 실제로 위로금을 받았다.

국민 기금은 또한 전 “위안부”가 존재하는 국가들의 노인 여성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문화적인 제약으로 인해 피해 여성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가 예산에서 7억엔의 기금을 국민 기금의 의료, 복지 사업을 위해 비축해 두었다. 일본 정부는 또한 미래에 이러한 관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을 향상하고 이러한 비극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에 포함시킬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아마도 일본 법정에 소송 중인 6개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라이베리아

39. 라이베리아 내전이 시작된 지 5년 후인 1994년 몬로비아(Monrovia)와 그 주변 지역에서 15세 이상의 여성과 소녀 스무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를 실시할 당시 수도에는 약 50만명이 살고 있었다. 조사는 라이베리아인 보건 직원이 몬로비아 내 고등학교, 시장, 난민 수용소, 도시 지역의 네 장소에서 수행했다. 면담 대상자는 각각의 장소에서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40. 이 조사는 몬로비아에 살고 있는 여성이 1989년 내전이 시작된 이래 얼마나 자주 군인과 전투원의 폭력, 강간, 성적 강압을 경험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성적 강압은 예를 들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머물 곳과 입을 옷을 마련하기 위해, 보호와 안전을 위해 전시 상황에서 전투원과 강제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41. 조사된 205명의 여성과 소녀들 중에 절반에 가까운(49퍼센트) 수가 적어도 한 가지 형태의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했다. 군인 또는 전투원은 6명 중 1명의 여성과 소녀(17퍼센트)를 때리거나 묶어두거나 감금하였다(방에 가두거나 보초병이 지키게 하였다). 그들은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32퍼센트) 여성과 소녀를 한 번 또는 그 이상 알몸 수색했다. 그들은 7명 중 한 명 이상에게(17퍼센트) 강간, 강간 미수 또는 성적 강압을 저질렀다. 또한 많은 비율의 여성과 소녀가(42퍼센트) 병사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강간하는 것을 목격했다.

42. 조사에 참여한 여성과 소녀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라이베리아에서 내전이 시작된 후 5년 동안 최소한 한 번 이상 군인과 전투원에게 신체적 성적 폭력을 당했다. 특정 부족이나 전투 세력에 속한다는 것이 고발되면 신체적 폭력과 강간 기도의 중요한 위험요소가 되었다. 전쟁이 시작될 당시 20세 또는 그 이상의 여성은 억류되거나 알몸 수색당할 위험이 아주 높았다. 젊은 여성, 그리고 군인이나 전투원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도록 강요된 여성은 특히 성 폭력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

43. 라이베리아 내전의 초기에는 정부군과 전투 세력은 주로 부족에 따라 나뉘어 있었다. 군인이나 전투원과 마주친 민간인은 흔히 자기 부족의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어느 부족에 속하는지를 밝혀야 했다. 군인이나 전투원과 마주쳤을 때 자신이 속한 부족이 적의 부족으로 나타나면 이러한 여성은 성폭력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던 것으로 이 조사에서 나타났다. 조사의 표본은 초기 전투에 개입한 주요 부족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족에 속한 여성들이 더 많은 위험을 겪었다는 것이 이 조사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표본에 있던 15개 부족 모두 여성폭력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44. 전투원이 한 마을을 점령하면, 여성에게 자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여성이 검문소를 지날 때 전투원이 검문소에서 여성을 데려와 자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도록 강요한다. 군인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여자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배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성들은 보고했다. 음식을 준비하도록 강요당한 여성의 절반 이상이 성폭력을 경험했다.

멕시코

45. 폴라 갈레나 발란자(Paula Galeana Balanzar), 알바 E. 후타도(Alba E. Hurtado), 로시오 메시노 메시노(Rocio Mesino Mesino)는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 살해 협박을 받아왔다. 1995년 6월 아구아스 블란카스(Aguas Blancas)에서 국가 안보군은 마을 동료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던 17명의 농부를 살해했다. 마을 조직책이었던 위의 세 여성들은 그 사건을 목격했다. 그 후로 이들은 계속해서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46. 최근 멕시코 남부의 치아파스(Chiapas)주와 게레로(Guerrero)주에서 내전이 발생했다. 인권옹호 단체는 이 곳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기록했다.

중국 : 티벳

47. 1992년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것으로 5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20세의 여성이 다른 수감자 여성들과 함께 민족주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여 간수들에게 폭행당했다. 교도소 의료진이 치료했으나 그녀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 후에 그녀는 결핵증으로 진단 받았으며 결국 사망했다. 수감 중에 발생한 사망임에도 중국 당국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페루 : 아이리스(Iris)의 사례

48. “그들은 내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였고 내 머리를 숙이게 했다.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병사들이 내 질에 손을 집어 넣었다. 그 후 내 귀걸이를 빼서 둔부에 찔렀다. 그리고 자동소총의 총구를 내 항문에 집어 넣었다. 그리고 나를 일으켰다. 나는 알몸이었고 내 얼굴은 가려져 볼 수 없었다.

49. 페루 내전에서 강간은 전쟁의 한 도구로서 양측 모두에 의해 사용되어왔다. 정부 안보군과 빛나는 길 게릴라군(Shining Path guerrilla) 모두 여성을 협박, 강간, 살해했다. 여성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구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몇몇 사건은 아메리카 인권법원에 제소되었다. 아메리카 인권법원의 최근 판결은 마리아 엘레나 로아이자(Maria Elena Loayza)는 페루 안보군에 의해 임의적으로 감금되어 고문당하고 강간당했으므로 그녀를 석방할 것을 명령했다. 1997년 10월 2일에 페루 정부는 1993년부터 수감 중이었던 이 대학교수를 석방했다.

르완다 : 엠마(Emma)의 사례

50. 투치족(Tutsi)인 엠마는 1964년 그녀의 아버지가 스파이 혐의로 살해된 후 후투족(Hutu)과 결혼했다. 그 결혼은 실패했으며 그녀는 다섯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집단살해가 시작되자 그녀의 남편이 찾아와 아이들을 모두 데려갔고 그녀는 숲으로 도망쳤다. 다른 가족들은 뒤에 남아 있었다. 인테라하메(Interahamwe) 반군은 아들과 성교하라고 그녀의 어머니를 강요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거부하자 그들은 어머니의 치아를 모두 부숴고 결국 살해했다. 그녀의 두 여동생은 강간당한 뒤 자신들의 무덤을 파라고 요구되었다. 그 둘은 모두 칼로 살해되었다. 엠마와 또 다른 여동생은 국가의 보호를 기대하며 타바(Tabaa)의 자치구로 갔다. 그러나 그녀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다. 먼저 당국은 투치 지식인들을 분리해서 학살했다. 엠마와 다른 사람들은 그 무덤을 파야 했다. 그리고 강간이 시작되었다. 엠마는 자치구에 있는 건물에서 15명 가량의 남성에게 강간당했다. 그녀는 걸을 수도 다리를 오므릴 수도 없었다. 그녀는 여동생과 함께 숲으로 도망쳤다. 인테라하메 반군이 다시 그들을 발견하였고 그들은 다시 강간당했다. 여동생은 강간당한 뒤 살해되었다. 그녀를 살해한 가해자는 타바에서 현재 자유롭게 살고 있다.

51. 엠마는 자이레로 도망쳤지만 군사 경계지에서 그녀는 또다시 강간당했다. 그 곳 군인은 “투치족을 맛보고 싶다”고 말했으며 그녀의 성기를 폭행했다. 이 때쯤에는 그녀의 내부 상처가 많이 악화되어 심하게 앓게 되었다. 그녀는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고 풀과 산딸기를 먹으면서 헤매고 다녔다. 마침내 르완다 애국전선(Rwandan Patriotic Front)이 그녀가 있던 지역으로 진입하였고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녀와 그녀의 이모가 그녀 가족 중에서는 유일한 집단살해의 생존자였다.

52. 강간이 광범위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는 처음에 강간 죄목을 기소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1997년 8월이 되어서야 여성 NGO들이 국제적으로 협동한 노력의 결과로 검사가 가해자를 성폭력으로 기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직 두 명만이 강간으로 기소되었을 뿐이다. 최근에 와서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집단살해 기간의 성폭력으로 개인을 처벌하기 시작했다. 르완다 집단살해법(Genocide Act in Rwanda)에 따르면 성폭력은 범죄자에게 사형을 구형할 수도 있는 일등급 범죄로 분류된다.

스리랑카

53. 1996년 9월 7일 시험을 치르고 자프나(Jaffna)의 카이타디(Kaithadi)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던 크리산티 쿠마라스와미(Krishanthi Kumaraswamy)는 칸디 자프나(Kandy Jaffna)도로에 있는 검문소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그녀의 어머니와 형제, 그리고 이웃 사람이 그녀를 찾으러 나갔다. 그들 또한 사라졌다. 한 달간의 절박한 호소 끝에 대통령이 개입했다. 마침내 4구의 시신이 발굴되었고 그 시신은 크리산티와 그녀의 어머니, 형제 그리고 이웃 사람으로 밝혀졌다. 크리산티는 살해되기 전에 집단 강간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54. 보안군 11명이 체포되었으나 그 중 2명은 국가 증인의 번복으로 풀려났다. 국가적 국제적 압력에 따라 이 사건에 우선권이 주어졌으며 현재 법정재판 중에 있다. 이것은 스리랑카 역사상 4번째 법정재판에 해당한다. 법정재판은 지방법원의 기본절차 없이 바로 고등법원 판사들로 구성된 패널이 심의를 한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다른 강간 사건의 경우는 이 같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코네스와리 무루게수필라이(Koneswary Murugesupillai)의 사건이 적절한 사례이다. 중앙수용소(Central Camp) 마을 출신이며 네 아이의 어머니인 무루게수필라이씨는 1997년 5월 스리랑카 경찰에게 집단강간 당했으며 그 후 이들은 그녀의 복부에 수류탄을 폭발시켜 살해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55. 반정부 그룹인 타밀엘람의 해방맹호(Liberation Tiger of Tamil Eelam)의 학대 사례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동부지역에 위치한 신할라(Sinhala) 국경지대의 습격과 인구 밀집지역인 북동부와 콜롬보(Colombo)의 폭격에서 특히 여성 민간인이 다수 살해되거나 장애를 입었다.

미국 : 윤금이 사례

56. 주한 미군인 케네스 마클(Kenneth Markle) 이병은 윤금을 콜라병으로 구타하여 살해하고 콜라병을 질에 쑤셔 넣었으며, 그녀의 항문에 우산을 집어 넣었다. 그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그녀의 사체에 세제 가루를 뿌렸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입을 성냥으로 채웠다.

57. 한국 대법원은 마클(Markle) 이병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유엔 평화유지군을 비롯하여 외국 군인이 저지르는 폭력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어느 법정에서 재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인도주의법을 적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국제 평화유지군의 필요성이 지속된다면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보다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B. 법적 틀

58. 고대부터 군인들이 전장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전쟁규범이 존재해 왔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문화적 배경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강간은 명예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에 강간은 이러한 규범에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중세말기에 비로서 비전투원의 면책 개념과 전시 강간의 불법화가 시작되었다.

59. 오늘날 무력충돌시 여성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틀은 조약법, 국제관습법, 국제전범재판소 관행을 비롯한 국제인도주의법에 의거한다. 전쟁을 규제하기 위한 현대 최초의 협약은 1907년 헤이그 협약이었다. 1907년 협약 제6조에 첨부된 육전의 ‘법과 관습에 관한 규제(Regulations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의 제46조는 전쟁 당사자들이 “가족의 명예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법적 해석에 따르면 1907년에 이르러 헤이그 협약은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었으며 전쟁 당사자는 이 후 이 협약의 정신을 지켜야한다.

60. 그러나 현재는 1949년의 제네바협약이 국제인도주의법을 지배하는 근간을 이룬다. 전시의 민간인 보호에 대한 제네바협약 (제4차 제네바협약)의 제27조에 따르면, “부녀자들은 그들의 명예에 대한 침해 특히 강간, 강제매음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외설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61. 제네바협약은 주로 국제 무력 충돌에 관한 것이지만 모든 조약에 공통적인 제3조는 내전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공통 제3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들은 위에 언급한 사람들과 관련하여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금지되며 또 그래야만 한다.

“(a) 생명과 사람에 대한 폭력, 특히 모든 종류의 고의적인 살인, 상해, 비인도적인 대우와 고문

“(b) 인질을 억류하는 것

“(c) 인간 존엄성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비인도적인 대우

62. 니카라구아 대 미국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제3조는 협약 조항일 뿐만 아니라 국제관습법의 일부로 인정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따라서 제네바협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전 당사자인 국가나 국가가 아닌 행위자 모두 이 조항에 구속된다.

63. 제4 제네바협약 제147조에 중대한 위반 grave breach)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사람은 그 개인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고위협약당사자(High Contracting Parties)는 누구나 그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보편사법권의 구속을 받는다. 제147조에 따르면 중대한 위반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고의적 살해, 고문 또는 생체 실험을 비롯한 비인도적 대우, 신체나 건강에 고의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부상을 야기시키는 것, 불법적 추방 또는 이송, 또는 이 협약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불법적 감금, 보호대상인 자에게 적대적 권력의 군사로 봉사하도록 강요하는 것, 보호대상자로부터 이 협약에 명시된 공정하고 정상적인 재판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 군사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으며, 불법적이고 무자비하게 수행되는 인질극, 광범위한 파괴, 재산의 도용”.

64. 비록 공통 제3조와 제147조에 명시된 중대한 위반에 성폭력 자체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최근 접수된 고발은 성폭력을 고문, 비인도적 처벌, 심각한 고통 또는 중대한 상해로 정의했다. 더욱이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는 1992년 12월 3일자 문서에서 중대한 위반에 대한 제147조 조항은 강간을 포함한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확장적 해석은 국제인도법과 공통 제3조항의 중대한 위반으로 개인을 성폭력으로 기소할 수 있게 했다.

65. 1977년 2개의 추가의정서가 제네바협약에 포함되었다. ‘1949년 8월 12일자 비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대한 제네바협약의 추가의정서 (제2의정서)’는 “개인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독적 비하행위, 강간, 강제매춘, 그리고 모든 형태의 비열한 폭행”을 금지하고 있다. ‘1949년 8월 12일자 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대한 제네바협약 추가 의정서 (제1의정서)’에도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66. 제네바협약뿐만 아니라 인권법의 다른 분야들도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은 제1조에서 “고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67. 강간이 항상 고문으로 명확히 정의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많은 사례에서 고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1992년에 고문 특별보고관은 이미 강간을 고문의 한 형태로 정의했다. 헤이그의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와 아루샤(Arusha)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는 고문의 한 형태로서 강간혐의로 개인을 기소했다. 또한 유럽인권법정(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은 1997년 9월 25일 에이딘(Aydin) 대 터키사건의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함과 저항의 미약함을 쉽게 이용한다는 점에서 국가 공무원이 감금된 자에 대해 행하는 강간은 특히나 더 중대하고 끔찍한 학대의 형태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강간은 다른 신체적, 정신적 형태의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는 것과는 다른 깊은 심리적 상처를 피해자에게 남긴다... 본 법정은 피해자에게 가해진 신체적 정신적 폭력 행위와 특히 피해자가 당한 잔인한 강간 행위가 고문으로서 협약의 제3조에 위반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68. 고문 협약 이외에도 무력충돌시 여성폭력의 개념을 포함하는 다른 인권협약에는 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노예제 협약(Slavery Convention),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 있다.

C. 법적 틀의 적용

69. 다른 국제법 분야와는 달리 국제인도주의법에는 무력충돌시 범죄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국제재판소가 개입되어 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at Nürnberg Tribunal, 이하 뉘른베르크재판소), 극동국제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Far East, 이하 도쿄재판소), 아루샤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헤이그의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 중대한 위반, 인도에 반하는 범죄 사건에서 개인의 범죄 책임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4개의 국제재판소이다. 뉘른베르크 재판소가 최초로 설치되었다. 범죄는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구분된다. 강간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뉘른베르크재판소에서는 한 명도 성폭력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70.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는 용어는 뉘른베르크재판소에서 전쟁범죄를 유발하고 장려한 정책을 실행한 추축국의 정치 지도자를 재판할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기소를 위해 이용된 부분은 이 후 제4차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부분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전쟁범죄 부분이었다.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추가는 전시뿐 아니라 평화시에 발생한 범죄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로 인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범죄에만 한한다. 따라서 젠더(gender)는 독립적 기소의 근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젠더를 독립된 기소 근거로 인정하는 난민법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71. 뉘른베르크 헌장(Nürnberg Statute)은 비록 강간을 범죄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독일 점령국들은 독일관리아사회 법률 제10호(Control Council Rule No.10)에 강간을 범죄로 포함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라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쿄재판소의 상황은 좀 달랐다. “남경강간” 사건은 강간이 인정된 관행이 아니라 전쟁협약의 위반임을 보여주었다. 일본 장교 히로토(Hiroto)와 토요다(Toyoda)가 기소되었으며, 이러한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72. 이로부터 50년이 지난 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구유고슬라비아 지역과 르완다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의 기소를 위해서 2개의 임시 국제재판소를 설치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시 강간이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명백하게 포함되었다.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헌장에 전쟁범죄 부분과 중대한 위반 부분에는 안타깝게도 강간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사실(Office of the Prosecutor)은 성폭력을 저지른 특정 범죄자들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집단살해, 노예화, 중대한 위반, 강제매춘으로 기소했다. 사회 정의를 증진하려는 검사실(OTP)의 창의성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피고를 성폭력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드물었다. 또한 재판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73. 검사실은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공개적으로 고발된 20개의 사건 중 6건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된 사건 중 2건을 기소했다. 두 재판소 모두 공격과 상해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성폭력으로도 기소했다. 이것은 역사상 최초로 국제재판소에서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각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범죄로 기소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74. 검사실은 강간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공통 제3조의 전쟁범죄로서 강간혐의로 피고를 기소했다. 반면 신체적 상해 또는 고통을 유발하는 다수에 의한 반복적 강간인 경우에만 특히 이것을 “고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공통 제3조에 따라 강간이 사건 단독으로 기소되었으며, 다른 성폭력과 성적 상해 사건은 “잔혹한 대우”, “인간 존엄성 파괴”, “모욕적, 비하적 대우”로 기소되었다.

75. 검사실은 공통 제3조를 이용해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 이외에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도 피고인을 기소했다. 또한 성폭력을 저지른 피고인이 신체적 상해와 고통을 유발하는 다수에 의한 반복적 사건에 관련된 경우 “고문” 혐의로 기소하였다. 개별적 강간 사건 및 다른 형태의 성적 폭력의 경우는 “고의로 신체나 건강에 심각한 고통이나 부상을 야기시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 없는 경우에는 “비인도적 대우” 혐의로 기소되었다.

76. 공통 제3조와 중대한 위반 조항 이외에도 검사실은 분명히 금지된 행위로서 그리고 “고문”과 “노예화”로서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서 강간을 기소했다. 성폭력을 노예화로 구분한 것은 검사실이 국제법에 공헌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포카(Foca) 기소장은 여성이 몇 달간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성적, 가사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강요당한 사건에 대해 노예화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포함했다. 검사실은 이 사건이 “노예화” 정의에 포함되는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77. 검사실은 또한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모두에서

집단살해로서의 강간을 근거로 기소했다. 집단살해는 명령체계의 고위 당국자를 기소하는데 주로 이용된 항목이다. 이것은 환영할 만한 검사실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강제임신이 “집단학살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집단학살협약(Genocidal Convention)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님에도 포카(Foca) 기소장이 이렇게 밝힌 것에 대해 심리부(Trial Chamber)가 검사실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과, 강제임신, 집단살해 사이에는 분명한 연계가 있다. 검사실이 이것을 인지하고 국제법의 경계를 확장한 것은 훌륭한 일이다.

78. 검사실은 이러한 혁신적인 기소만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현장과 절차 규정도 갖추고 있다. 여성 권리의 측면에서 중심이 되는 규정은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절차와 증거 규정’인 규정 제96호(1995년 2월 6일자 IT/32/Rev.3/Corr.1)이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도 성폭력 사건의 증거조사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유사한 규정이 있다. 규정 제96호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에서:

“(i) 피해자 증언에 대하여서는 보강 증거가 요구되지 않는다.

“(ii) 아래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것이 가해자의 반론으로 사용될 수 없다.

피해자가 지배당하거나 또는 위협을 당하는 상태에 있거나, 폭력, 협박, 감금, 또는 심리적 억압을 두려워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피해자가 복종하지 않으면 대신 타인이 지배, 협박을 당하거나 공포에 떨어야 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iii) 피해자 동의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기 전에 피고는 카메라로 그 증거가 유의미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비밀리에 심리부에 증명해야 한다.

“(iv) 피해자의 이전 성적 행동은 증거가 될 수 없다.”

79. 피해자와 증인 모두를 보호하도록 한 절차와 증거 규정 제69항과 제75항 또한 성폭력 사건의 기소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증인보호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소가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와 증인은 보복 협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증언하려 나오지 못한다. 르완다에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부족은 여성이 공식적 고발을 하기 위해 나서지 않고 있는 주요한 이유이다.

80.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은 증인에 대한 보호도 보장할 수 있는 기제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익명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조직 범죄의 기소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었다. 증인 익명성 제도(witness incognito)는 범죄자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81.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로 보내진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 라틴어로서 “friend of the court”라는 의미)의 서한은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가 “재판과정에서 개별 사건의 시비곡직에 따라 증인의 익명성을 가능한 장기간 보호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 절차에서 증인 익명성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것이 피고가 고소인을 대면하고 고소인을 상호 점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몇몇 국내 상황에서 증인 익명성 제도가 인권활동가를 억압하는 국가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다.

82. 그러나 또 다른 상황에서는 공정성과 정의의 집행을 위해서 혁신적인 특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신분을 대중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것으로 르완다 재판소에서 아카예수(Akayesu) 사건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 재판소는 노출을 금지하고자 했고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고를 마주할 필요가 없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사용하도록 했다. 두 번째는 증인의 신분을 피고가 절대로 알 수 없도록 하는 형태이다. 구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의 전쟁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83. 검사실의 혁신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충분히 발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법조계의 법정 조언자가 검사실이 성폭력에 주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경우가 두 차례나 있었다. 르완다에서는 법조계의 법정 조언자와 그 종사자들이 기소를 증명할 유용한 증거 수준을 알려주고 나서야 비로소 성폭력을 기소하기 시작했다. 1997년 8월 검사실은 훌륭하게도 기소장에 강간과 성폭력을 포함시키기 위해 이를 수정했다. 집단살해 동안의 대규모 성폭력 사건에 직면하여 특별보고관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성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가질 것을 요청한다.

84. 기소는 불처벌에 대항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심리부가 이것을 재판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3명으로 구성된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심리부 의견서에 따르면 법정 성폭력을 처벌하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견서는 비감금 상황도 포함하도록 강간에 대한 기소를 확장하며; 성폭력은 집단살해의 한 요소가 될 수 있고, 강제임신은 집단살해 의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확인하며;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명령체계가 부족해도 고위 간부 및 정치적 지도자의 책임을 재확인하며; 강간을 고문의 한 형태로 정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85.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헌장의 초안 작업이 헤이그와 아루샤의 작업과 병행하여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특히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이 두 재판소의 법률적 혁신적 활동이 재판소 헌장의 초안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많은 젠더인지적 언어가 괄호 안에 기술되어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특별보고관은 특히 범죄의 정의에 대해 우려한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헌장은 구시대적 제네바협약 단순히 대신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전쟁범죄,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범죄를 정의하는 부분에 성폭력, 강제매춘, 강제임신, 그리고 강간을 명확하게 포함해야 한다. 또한 절차 규정은 반드시 피해자를 고려하여 고안되어야 한다.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절차와 증거 규정의 규정 제96호와 같은 절차 규정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증거수집 절차에 편입되어야 한다.

86. 젠더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법의 시기 적절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인권과 인도주의법의 집행 기제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을 구제하여 불처벌을 폐지하기 위해 투쟁하고 무력 충돌 시 가장 침해하게 나타나는 국내 제도의 실패에 대항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또한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임시 재판소의 내재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내 형사재판소의 모범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가 여성폭력과 관련한 개선된 기준을 분명하게 편입하는데 실패한다면 이것은 법률적 후퇴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87. 특별보고관은 또한 기소를 촉발하는 기제가 반드시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우려한다. 안전보장이사회에 기소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이사회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형사재판소를 정치화하고 재판소의 적용이 선택적이며 편향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다. 주요한 범죄에 대한 불처벌이 “협상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88. 피해자와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NGO는 독립적이고 실권이 있는 검사실과 함께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효력있는 국제 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 검사의 독립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검사가 여성폭력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이 검사실에 성범죄 법률 전문가와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다룰 수 있도록 훈련된 인력이 성폭력 사건 기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현장에는 피고의 권리와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인보호와 증인 익명성제도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89. 마지막으로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가 아닌 행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준군사 단체와 기타 국가가 아닌 행위자의 경우 아메리카 인권법원의 벨라즈케즈 판결이 국가가 이들 행위자에게 인권 침해의 방지, 기소, 처벌의 정당한 임무를 준수하라고 요구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한 명백한 방법을 제시했다.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가 아닌 행위자의 경우 자신도 국제인도주의법, 개인과실 원칙, 보편사법권에 구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D. 사회경제적 결과

90. 무력 충돌은 여성에게 커다란 사회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 여성은 직접적 피해자로서, 난민으로서, 남편이 전쟁으로 사망한 부인으로서 전쟁을 경험한다. 이 여성들은 갑자기 집안의 생계를 맡게 되며, 르완다의 경우와 같이 여성 가정의 수가 급증한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없다면 여성은 더욱 무력해진다.

91. 사회의 일반적 군대화 현상은 여성에게 더욱 영향을 미친다.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사회 평론가들은 사회의 군대화가 폭력 문화를 조장하며, 일상 생활도 폭력으로 점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폭력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전시에나 상대적 평화시에 여성은 흔히 폭력 문화의 진정한 피해자로 여겨진다.

92. 무력 충돌시 폭력의 경제적 결과는 광범위하다. 이것은 대부분이 여성과 그들의 아이들로 구성된 일반인에게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박탈한다. 무력 충돌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대부분 전기, 수도, 적절한 주거와 의료 서비스가 없다. 식량 공급도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이 가장인 여성들은 가족을 이끌어갈 책임을 마주하게 된다. 또한 무력 충돌의 상황으로 인해 고급 기술자와 인력이 빠져나가 그 중에서도 특히 자격이 있는 의료, 심리, 법률 전문가가 부족해진다.

93. 전쟁 당사자 중 한 편에 무기를 공급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분쟁의 정치적 제재를 통해 종종 분쟁에 일정한 역할을 한 국제사회는 분쟁이 끝난 뒤 재건에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 재건은 특히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가장으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의 경제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성의 기술 개발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특별 과정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에서 생활을 정상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94. 경제적 여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분쟁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트라우마(정신적 육체적 충격)로 인한 질병을 경험한다. 따라서 재건과 화해의 과정은 심리적 치유와 트라우마 문제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여성폭력의 생존 피해자를 다룰 수 있도록 훈련받은 상담자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국가 구조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여성폭력의 생존 피해자는 특별히 지지, 상담,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 재건과 재활 과정의 일환으로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용하는 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E. 무장 충돌: 권고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

95. 무장 충돌시 여성폭력에 대한 개선된 규범을 포함시키기 위해 기존 인도주의법 기준을 평가하고 관행을 수정해야 한다. 특히 고문협약, 집단살해협약, 제네바협약은 이러한 관점에서 재조사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96. 평화유지가 유엔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므로 평화유지군을 분쟁 지역으로 파견하기 전에 젠더문제에 관한 필수적인 훈련을 받도록 한다. 평화유지군이 저지른 위반행위 역시 국제 범죄로 여기고 이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97. 재건과 재활은 분쟁이 끝난 사회를 다시 건설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사회는 경제적 재건에서부터 심리 상담과 사회적 재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특별 기금과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인권과 민주주의적 통치에 대한 훈련도 포함해야 한다.

98. 국가가 아닌 행위자가 저지른 위반도 처벌할 수 있도록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법 상에서 이들의 국제법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권고

99. 국제형사재판소의 정관은 내용면에서 그리고 절차상에서 모두 여성폭력에 대한 조항을 명백히 포함해야 한다.

100.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범죄의 여성 피해자를 위해 정의를 확보하려면 젠더

시각이 국제형사재판소 정관의 모든 영역에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집단살해의 정의에 강간과 강제임신, 강제불임, 성적 상해 등과 같은 기타 성폭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젠더 관점

강간과 강제매춘 그리고 기타 형태의 성폭력을 증대한 위반 및 전쟁법과 관행의 증대한 침해로 명확하게 비난하는 것

강간, 강제매춘, 강제임신 그리고 기타 형태의 성폭력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명확하게 비난하는 것

배상, 재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를 비롯한 피해자를 위한 법적 구제

비정치적인 촉발 기제

강력한 젠더문제 담당 부서가 설치된 독립적인 검사실

현재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운영 중인 증거 규정에 기반한 성폭력 사건 기소를 위한 피해자 배려 증거 규정

국가에 대한 권고

101. 국가는 그 국경 내에서 안보군에 의해 발생한 범죄적 행위가 국제인도주의법 상에서 불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방지, 처벌, 기소하는 책임을 맡도록 하며;

국가 기제 내에서 피해자 부상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구제를 제공하며;

무력 충돌 시 여성폭력의 생존 피해자에게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한다.

102. 모든 국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집단살해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을 비롯한 관련 국제인권조약과 인도주의법을 비준해야 한다.

103. 모든 국가는 전쟁범죄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기소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국제 기관과 협조해야 한다.

104. 모든 국가는 국내 형사법, 군대 행동 규범 그리고 기타 특별 소송법이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법에 따르도록 개정해야 한다.

105. 모든 국가는 성폭력 사건의 증거수집 절차가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는 기제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절차와 증거 규정 제96호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106. 모든 국가는 모든 군대와 법집행 공무원이 체계적 성문제 인식 훈련을 거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훈련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제법에 따라 성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확인하는 방법;

조사와 기소시에 성인지적 절차를 마련하고 성인지적 방식을 제공하는 방법;

전장에서 작전 중에 성문제에 둔감한 행동을 초래할 수 있는 군인들의 잠재적인 태도를 다루는 방법

107. 군대와 법집행 공무원의 성훈련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제도의 기타 분야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 검사, 법관, 법의학 수사관들도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108. 모든 국가는 성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엔의 법집행 사무관 행동 규범(United Nations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을 받아들여 군대의 행동 규범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가 아닌 행위자에 대한 권고

109. 모든 국가가 아닌 행위자는 자신이 국제 인도주의법에 대한 개별 범죄에 책임이 있다는 것과 보편사법권에 따라 그러한 범죄는 어떤 법정에서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며, 국제 인도주의법과 인권법의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

NGO에 대한 권고

110. NGO는 정부가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법의 위반을 방지, 처벌, 기소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111. NGO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무력 충돌 시 여성이 처하게 되는 실제 상황을 점점 더 알리도록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NGO는 무력 충돌 상황을 계속 감시하고 많은 국제, 지역 인권 기구와 청원 기제를 이용해 국내외 여성폭력 사건을 국제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112. NGO는 무력 충돌로 인한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올바르게 인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NGO는 피해 여성들이 나서서 고발하도록 지원하여 불처벌의 악순환이 종식되도록 해야 한다.

113. 인권운동의 주류에서 활동하는 NGO는 자신의 모든 활동이 젠더 관점을 통합하도록 확인하면서 일해야 한다.

114. 성인지적 기록방식은 진상조사 시에 여성폭력 생존 희생자에게 재차 트라우마를 겪게 하거나 위협에 처하게 하는 것을 막도록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동일한 판사가 헤이그 검사실과 키갈리 사무소에서 부검사장의 지휘 하에 근무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준 다음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리사 M. 코이스(Lisa M. Kois), 로잔나 파베로(Rosanna Favero), 미나리 페르난도(Minari Fernando), 수니티 쿠루푸(Sunithi Kuruppu), 헬렌 킨셀라(Helen Kinsella), 앙드레 세귄(Andréa Séguin), 비디아 람(Vidya Ram), 쇼바나 카나가싱함(Shobana Kanagasingham), 아스트리드 아프제스(Astrid Aafjes), 알리 밀러(Ali Miller), 카렌 파커(Karen Parker), 켈리 돈 아스킨(Kelly

Dawn Askin), 크리스틴 친킨(Christine Chinkin), 다이안 오헨리허(Diane Orhenlicher), 워싱턴 법과대학 전쟁범죄 연구실, 멜 제임스(Mel James),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실.

Judith G. Gardham, “The Law of Armed Conflict: A Feminist Perspective” in Mahoney (ed), Human Rights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3, pp. 419-436 참조.

The Velásquez Rodríguez cas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Ser. C., No. 49, Human Rights Law Journal, vol. 212, 1988.

Amnesty International, Memorandum on Women’s Rights in Afghanistan, February 1997.

Karima E. Bennoune, “The War Against Women in Algeria”, in Ms. Magazine, September/October 1995, London,p.22.

Human Rights Watch, The Human Rights Watch Global Report on Women’s Rights, NewYork,HumanRightsWatch,1995,p.18.

1997년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에게 제출된 정보. 미발행. p. 4.

Amnesty International, Urgent Action, AI Index: AMR 34/08/96, 1 March 1996.

Human Rights Watch, op. cit., p. 40.

Amnesty International, India:SubmissiontotheHumanRights Committee Concerning Implementation of Articles of the ICCPR, July 1997, p. 35.

Human Rights Watch, op. cit. pp. 60-65.

1995년 한국과 일본 방문시 특별보고관이 들은 증언.

S. Swiss and P.J. Jennings, “Violence against Women During the Liberian Civil Conflict”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5 February 1998 (in press).

Amnesty International, Urgent Action, AI Index: AMR 41/06/96,
15 February 1996.

Amnesty International, People's Republic of China, Six Years after
Tiananmen: Increased Political Repress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I Index: ASA 17/28/95, June 1995, pp. 12-13.

Human Rights Watch op. cit. 85.

1997년 르완다 방문시 특별보고관이 들은 증언.

스리랑카에서 특별보고관에게 제출된 정보.

The National Campaign for Eradication of Crime by US troops in
Korea, Seoul, 1997, p.15.

Theodor Meron, "Rape a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90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0, 1993, p. 424.

I.C.J. Reports, 1986.

Christine Chinkin, "Amicus Curiae Brief on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and Witnesses" in Criminal Law Forum, vol. 7, No. 1, 1996, p.
180.